

##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3. 7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3. 7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3. 18 (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
- 나. 제안사유
  -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
- 다. 주요내용
  - 안 제5조 2항중 "소송한"을 → "승소한"으로
  - 안 제5조 2항중 "지급액의 6배까지의"를 → "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"로 개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 병 향)

-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지시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생 략

### 5. 토론요지

생 략

### 6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첨 부 :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2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7

제출자 : 화순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"소송한"을 → "승소한"으로 개정 (안 제5조 제2항)
- "지급액의 6배까지의"를 → "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"로 개정 (안 제5조 제2항)

##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중 "소송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"를 "승소한 경우에는

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.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 (포상금 지급액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<u>소송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 (포상금 지급액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- - - - - - <u>승소한 경우에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</u> - - - - - - - - - - .</p>